

제301회 정례회
교육위원회

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 설명



2021. 06. 18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동 현
(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)

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동구1 이동현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」에 대한
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76호
「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최근 금융투자가 보편화되자 실제로 주식, 가상자산 등 금융
상품 투자를 시도하는 청소년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.

이와 함께 청소년 및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,
유사투자자문업의 불법 영업행위, 보이스피싱 등 금융 분야
에서의 피해가 증대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,
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

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‘합리적인 금융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’는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금융소비자로서의 금융역량을 향상하여 다양한 금융사기 및 금융사고의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금융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본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